pISSN 1229-1153 *J. Fd Hyg. Safety*
Vol. 27, No. 1, pp. 55~62 (2012)

Journal of Food Hygiene and Safety
Available online at http://www.foodhygiene.or.kr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대한 학교주변 판매업자 인식조사

이승신 · 양덕순[1]* · 이종혜[1] · 이영희[2] · 허선경[3]
건국대학교, [1]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2]University of Houston, [3]식품의약품안전청

Perceptions of the Retailers within Green Food Zone on the enforce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Seung-Sin Lee, Deok-Soon Yang*[1], Jong-Hye Lee[1], Young-Hee Lee[2], and Sun-Kyung Heo[3]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1]Korean Institute for Consumer Education
[2]University of Houston, Texas, U.S.
[3]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Received December 27, 2011/Revised February 1, 2012/Accepted February 14, 2012)

ABSTRACT - This study is a survey of regulatees' perception on main contents and enforcement effect of the Act, the retailers at food stores within Green Food Zone, for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legislated in 2008. Percentage, frequency analysis, and T-test are derived from the survey carried out to the 175 retailers at food stores within Green Food Zone, across the country except Jeju-do, for the two months March and April of 2011. The survey results are as follows. Over 80% of the respondents are aware of comprehensive policy for child food safety and the enforcement of 'the Special Act' and considering the rate of satisfaction on food safety information provided by government, over 90% of the respondents, virtually most of them, are satisfied. The rate of awareness of Green Food Zone is about 80% and that of outstanding business for children is about 50%, showing little perception of it. The comparison of the survey result of 2011 with that of 2010, which have the same questions to the retailers within Green Food Zone, still indicates a need for enhancement of understanding on absolute standard, though it showed fairly better improvement in general. Several proposals are given in this study based on the survey results,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children food safety and health improvement in the end.

Key words: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Green Food Zone, Retailer, Perception

서 론

소비자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특히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학교주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학생들의 용돈수준을 고려한 저가 위주의 식품이어서 안전이나 영양면에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2010년 통계청에서 1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사회조사』 결과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에 대해서는 52.1%의 응답자가 불안하다고 답했다[1]. 2008년도 소비자단체의 조사에서는 판매 및 진열상태, 제품의 표시상태 등이 불량한 제품들이 다소 발견되었으며[2], 광주지역의 학교주변 실태를 모니터링 한 결과, 조사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61개 중 32개가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이었으며, 탄산음료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대구 경북지역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식품을 바닥에 진열한 경우가 61.7%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이 주로 구입하는 식품의 가격이 100원대로 나타나서[4],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서 또 하나의 관심사는 어린이 비만과 관련한 문제이다. 초 · 중 · 고생의 비만율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조사결과 비만율이 14.25%에 이르고, 고도 비만율은 1.25%로 나타났다[5]. 초등학생의 경우 53.44%, 고등학생의 경우 62.33%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고[5], 중 · 고등학생이 주 3회 이상 탄산음료를

*Correspondence to: Deok Soon Yang, Korean Institute for Consumer Education, Seoul, Korea
Tel: 82-2-887-3230, Fax: 82-2-713-8605
E-mail: yangds5@daum.net

섭취하는 비율은 24.3%로 나타났다[6].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 섭취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식생활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축이 되어 2007년부터 추진되었고, 2008년에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었다[7].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8년 3월에 제정되어, 2009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주변 200 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관리하고,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정서저해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미끼식품의 광고를 금지하고, 어린이 주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7시 사이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를 제한하며,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제한과 우수식품 판매를 권장함으로써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유도하고 나아가 비만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였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인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판매업자들이 이 법의 제정 사실을 알고 주요 규정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법의 피규제자인 판매업자들의 법의 시행과 주요 내용에 대한 인식은 법의 성공적인 시행에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규제자인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자들을 대상으로 이 법의 주요내용과 시행효과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식생활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연구방법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11년 3-4월 두 달 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0개 시도의 초·중·고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175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조리·판매업소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면접원의 안내에 따라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영업경력, 지역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Variables		N	%
Gender	female	131	74.9
	male	44	25.1
Age (Mean:44.24, S.D.:11.48)	20-29	20	11.4
	30-39	26	14.9
	40-49	78	44.6
	50-59	37	21.1
	> 60	14	8.0
Carrer (Mean:5.62, S.D.:7.17)	< 2 years	65	37.1
	2-5 years	43	24.6
	6-10 years	28	16.0
	11-15 years	19	10.9
	> 16 years	18	10.3
	missing	2	1.1
Region	Seoul	36	20.6
	Busan	10	5.7
	Daegu	8	4.6
	Daejeon	10	5.7
	Incheon	10	5.7
	Ulsan	8	4.6
	Gwangju	6	3.4
	Gyeonggi do	25	14.3
	Chungcheong do	19	10.8
	Gyeongsang do	18	10.2
	Jolla do	15	8.5
	Gangwon do	10	5.7
Total		175	100.0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74.9%, 남성이 25.1%였다. 연령은 평균 44.24(표준편차 11.48)세였고, 최소 20세부터 최대 76세까지 분포를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영업경력은 5.62년(표준편차 7.17)이었고, 최소 1개월부터 48년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지역은 서울이 20.6%, 경기 14.3%, 충청도 10.8%, 경상도 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문항

본 연구의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영업경력, 지역을 묻는 4문항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대한 학교주변 판매업자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 종합대책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각각 1문항, 정부에서 제공하는 식품안전 관련정보에 대한 만족도 1문항,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및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인식 각각 1문항,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신청 의사 및 신청 않는 이유 각각 1문항, 우수판매업소 신청 촉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3문항,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상 판매금지 및 광고기준에 대한 인식 4문항,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의 위생수준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 각각 1문항,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정

책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4문항,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효과에 대한 인식과 1년 전 효과에 대한 인식 각각 10문항 등 모두 4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통계처리

회수된 설문지의 결과는 SPSS 17.0 WIN 프로그램으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빈도, 백분율로 표기하였고, 1년 전과 현재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어린이 식품안전 종합대책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 판매원들의 82.3%(잘 알고 있다 36.0%, 대강 알고 있다 46.3%)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82.9%(잘 알고 있다 36.6%, 대강 알고 있다 46.3%)로 나타나, 응답자의 80% 이상이 특별법의 시행을 인식하고 있었다. 2010년 학교 주변 판매업소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한 연구[8]에서는 각각 82.1%(잘 알고 있다 34.5%, 대강 알고 있다 47.6%), 74.5%(잘 알고 있다 28.3%, 대강 알고 있다 46.2%)로 나타나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인식은 본 조사 결과와 별 차이가 없었으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한 인식은 작년 보다 약간 증가하였다.

같은 질문에 대하여 ‘잘 모름’이 각각 17.7%, 17.1%로, 2010년도 학교 주변 판매업소 판매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8]와 비교해볼 때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는 비율이 9%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인식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어린이 식품안전 종합대책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판매업자도 다수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 종합대책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식품안전 관련정보에 대한 만족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식품안전 관련 정보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25.7%였고, ‘보통이다’는 64%, 10.3%가 불만족이라고 응답하였다. 선행연구[8]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만족한다’는 응답이 7.1% 정도 늘었고, ‘불만족하는 편이다’는 5.6% 감소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식품안전관련 정보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교주변 판매업소와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 및 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대표적인 예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을 학교 주변에 부착하였고, 고열량・저영양 식품 안내 포스터를 제작하여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였으며, 휴대폰을 통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9]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식약청의 정보제공 사이트인 식품나라 또는 식품지킴이 블로그 등을 통해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상 규정과 시행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왔다. 이러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보제공 노력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부의 정보 제공에 대한 만족도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Awareness of comprehensive policy for child food safety and the enforcement of the Special Act

classification		N	%
Awareness of the measures for comprehensive child food safety	know very well	63	36.0
	know roughly	81	46.3
	don't know	31	17.7
Awareness of the enforcement of ‘the Special Act’	know very well	64	36.6
	know roughly	81	46.3
	don't know	30	17.1
total		175	100.0

Table 3. Satisfaction on food safety information provided by government

classification	N	%
satisfied	45	25.7
moderate	112	64.0
dissatisfied	18	10.3
total	175	100.0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및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인식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로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지정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우수판매업소에서는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고, 시설 개수나 보수비용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Table 4에 의하면 ‘자신의 업소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78.3%였고, 21.7%는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7-9월동안 대전지역을 조사한 연구[10]에서는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56.3%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모른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해 볼

Table 4. Awareness of Green Food Zone and outstanding business for children

classification		N	%
Awareness of Green Food Zone	know very well	137	78.3
	never know	38	21.7
	total	175	100.0
Awareness of outstanding business for children	know and is designated	-	-
	know but is not designated	84	48.0
	do not know very well	91	52.0
	total	175	100.0

때 이번 조사결과는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향상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해 '알고 있으나 지정은 안되어 있다'는 응답은 48.0%였고, '잘 모른다'는 응답은 52.0%였다. 학교 주변 판매업소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8]와 비교해볼 때 '잘 모른다'는 응답은 줄어들고 우수판매업소에 대해 '알고 있으나 지정은 안되어 있다'고 명확하게 알고 있는 비율은 증가하였다. 조사결과, 아직도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판매업자가 52%로 나타나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신청 의사 및 신청 않는 이유

Table 5에 의하면 앞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신청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61.7%로 학교주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에 대해 50.0%가 우수판매업소 신청의사가 있다고 한 선행연구[8] 결과 보다 높게 나타났다.

Table 5. Intention to apply for outstanding business for children & reasons for not applying

classification		N	%
Intention to apply for outstanding business for children	Yes	108	61.7
	No	67	38.3
	total	175	100.0
Reasons for not applying	little effect for promotion	12	11.1
	sales restriction of popular items	6	5.6
	no great profits	51	47.2
	regulations of sales	20	18.5
	etc	19	17.6
	total	108	100.0

38.3%의 응답자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신청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우수판매업소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실익이 크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7.2%로 가장 많았고,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기 때문(18.5%)', '홍보효과가 크지 않아서(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절차가 복잡해서', '잘 몰라서', '귀찮아서'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우수판매업소 신청 촉진 방안

Table 6에서 어떤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우수판매업소로 신청하겠냐는 질문에는 '모든 업소가 신청한다면'이 52% (매우 그렇다 18.9%, 그렇다 33.1%),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면' 신청하겠다는 응답은 56%(매우 그렇다 23.4%, 그렇다 32.6%),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면' 신청하겠다는 응답은 52.6%(매우 그렇다 17.7%, 그렇다 34.9%)로 나타나,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심도있는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이들 방안에 대한 응답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나머지 두 가지 우수판매업소 신청을 위한 촉진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 고려가 필요하다. 2011년에 식약청을 비롯한 자치단체별로 우수판매업소 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우수판매업소가 2010년에 1,037개에서 1,559개(2011년 3분기 기준)[12]로 확대되었으나, 전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볼 때 좀 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상의 판매제한 · 광고기준에 대한 인식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하여 고시된 '어린이 기호식품의 종류와 판매제한 · 금지식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는 응답은 16.0%로 나타났고, '조금 알고 있다'가 45.1%,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다'는 22.9%, '모르고 있다'가 16%로 나타났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기준은 58.3%가 알고 있다('자세히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0.6%가 있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으며, 21.1%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저해식품의 기준은 46.3%가 알고 있다('자세히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

Table 6. Measurements for encouraging application for outstanding business for children

classification N(%)	strongly agree	agree	moderate	dis-agree	not at all	don't know	total
with every store's application	33(18.9)	58(33.1)	67(38.3)	5(2.9)	4(2.3)	8(4.6)	175(100.0)
with plenty of incentives	41(23.4)	57(32.6)	62(35.4)	2(1.1)	3(1.7)	10(5.7)	175(100.0)
with relieving regulations	31(17.7)	61(34.9)	66(37.7)	3(1.7)	3(1.7)	11(6.3)	175(100.0)

Table 7. Awareness of selling restriction and advertising standard of "The Special Act"

classification N(%)	know very well	know a little	merely aware of them	don't know	total
sorts of children's favorite snacks and prohibited foods	28(16.0)	79(45.1)	40(22.9)	28(16.0)	175(100.0)
standards of high calorie foods with low nutritional values	24(13.7)	78(44.6)	36(20.6)	37(21.1)	175(100.0)
standards of emotion impeding foods	19(10.9)	62(35.4)	36(20.6)	58(33.1)	175(100.0)
standards of food tie-in toys	15(8.6)	39(22.3)	31(17.7)	90(51.4)	175(100.0)

으며, 20.6%가 정서저해식품 기준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으며, 33.1%의 응답자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끼식품의 기준은 30.9%가 알고 있다('자세히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1.4%의 응답자가 미끼식품 기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선행연구와[8] 비교해보면 어린이 기호식품의 종류와 판매금지 식품에 대한 것은 별 차이가 없지만, 나머지 3개 기준에 대해서는 판매원들의 인식(2010년 3개 기준 각각에 대해 '잘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를 합한 비율이 40.7%, 37.2%, 17.9%에서 2011년도에는 각각 58.3%, 46.3%, 30.9%로 증가)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주변 조리 · 판매업소의 위생수준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

Table 8에 의하면 자신의 업소에서 판매 ·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수준이 안전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48.6%였다. 이는 전년도 학교주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8]에서 56.6%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볼 때 비율이 감소하였다. 이는 일반 판매업소 보다 학교 주변 조리, 판매업소의 위생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9에 의하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후 학교주변 '조리 · 판매업소'의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43.4%였다.

Table 8. Perception of the safety of foods sold at their own stores

classification	N	%
very safe	85	48.6
moderate	52	29.7
worried about it	7	4.0
don't know	31	17.7
total	175	100.0

Table 9. Perception of environmental change of food store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Special Act"

classification	N	%
enhanced	76	43.4
no particular change	52	29.7
getting worse	1	0.6
don't know	46	26.3
total	175	100.0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Table 10에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결과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상이 미미하다'는 문항에 대해 '보통이다'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87.4%로 가장 높았고,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도 어린이 식품안전에 큰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82.9%로 두 번째로 많았다. '위반한 판매업소에 직접적인 규제가 없다'(82.2%), '단속기간에만 잠깐 효과가 있을 뿐이다'(72.6%) 순으로 응답하였다. 선행연구[8]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문제점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약간씩 증가하여 식품안전 보호구역 정책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본 조사결과는 최근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의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2009년 12월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수가 8,051개 였던 것이 2011년 3분기 기준으로 9,382개로 늘어났고, 우수판매업소 지정도 306개 업소에서 1,559개로 늘어났다[1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시행 효과에 대한 인식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판매행위 10가지 문항에 대하여 현재 상태와 1년 전의 상태를 회상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무표시 제품의 유통 · 판매', '국적을 알 수 없는 식품의 판매', '제품의 업소명 및 소재지 미표시 제품 판매', '냉장 · 냉동 보관하여야 하는 제품을 실온에서 판매',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유통기한을 위조한 제품 판매', '식품판매 환경이 비위생적',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장난감 등을 끼워파는 식품 판매'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 90% 전후의 조사대상자가 응답하였다. 전체 10문항 중 6문항, 즉 제품의 업소명 및 소재지 미표시 제품,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 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유통기한을 위조한 제품 판매, 식품판매 환경이 비위생적,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에서 평균 4.9점(5점 만점) 이상을 획득하여 이와 같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판매행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4문항, 즉 무표시 제품의 유통 판매, 국적을 알 수 없

Table 10. Perception of the problems of 'Green Food Zone'

classification N(%)	very agreed	agreed	moderate	don't agreed	not at all	total
no significant change after designation	15(8.6)	63(36.0)	67(38.3)	23(13.1)	7(4.0)	175(100.0)
temporary effects during crackdown	18(10.3)	48(27.4)	61(34.9)	39(22.3)	9(5.1)	175(100.0)
no direct regulations to the violators	14(8.0)	51(29.1)	79(45.1)	24(13.7)	7(4.0)	175(100.0)
too slight reward for the outstanding business for children	21(12.0)	65(37.1)	67(38.3)	17(9.7)	5(2.9)	175(100.0)

는 식품의 판매, 냉장・냉동 보관하여야 하는 제품을 실온에서 판매, 장난감 등을 끼워파는 식품 판매에서도 평균 5점 만점에 4.85점 이상을 획득하여 극히 미미하였다.

Table 11에 의하면 일 년 전의 판매행위에 대한 평균 점수와 비교해보았을 때, 10문항 모두에서 t값이 유의($p < .001$)하게 차이가 났는데 이는 학교주변 판매업소의 판매원들이 1년 전보다 지금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음을 나타낸다. 1년 전 특히 취약했던 부문은 무표시 제품의 유통판매, 국적을 알 수 없는 식품의 판매, 냉장・냉동 보관하여야 하는 제품을 실온에서 판매, 장난감 등을 끼워파는 식품의 판매 등이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일 년 전과 비교하여 본 결과, 어린이 식품의 안전판매 실태는 향상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최근 식약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06년도 부적합이 3.88%(단속업소 수 19,417개 중 부적합 업소 수 735개)에서 2011년 3분기에는 0.13%로 감소하였는데[13], 이러한 결과는 판매업자들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효과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조사를 통해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판매자들이 관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한 인지를 잘 하고 있으며 식품 판매환경도 최근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 발표 자료에서도 2009년에 고열량・저영양식품의 비율이 32%에서 2011년 3월에는 22%로 감소하였으며[14],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위생수준을 단속한 결과 적발된 업체의 비율도 2004년 5.66%에서 2010년 0.26%[15]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다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원들을

Table 11. Perception for the enforcement effect of "The Special Act"

	classification N(%)		very frequent	frequent	moderate	a few	never	mean	t
1	distribution and sales of unmarked foods	last year†	2(1.1)	-	6(3.4)	46(26.3)	121(69.1)	4.62	−6.60***
		current	1(0.6)	-	1(0.6)	13(7.4)	160(91.4)	4.89	
2	sales of foods with unidentified origin	last year	1(0.6)	1(0.6)	5(3.0)	48(27.4)	120(68.6)	4.63	−6.97***
		current	-	1(0.6)	5(2.9)	7(4.0)	162(92.6)	4.89	
3	sales of foods with unmarked maker and location	last year	-	2(1.1)	11(6.3)	33(18.9)	129(73.7)	4.65	−6.02***
		current	-	1(0.6)	4(2.3)	7(2.9)	165(94.3)	4.91	
4	sales of chilled and frozen foods at room temperature	last year	-	2(1.1)	12(6.9)	38(21.7)	123(70.3)	4.61	−6.58***
		current	-	2(1.1)	3(1.7)	13(7.4)	157(89.7)	4.85	
5	sales of unsanitary foods	last year	1(0.6)	1(0.6)	4(2.3)	26(14.9)	143(81.7)	4.77	−4.57***
		current	-	1(0.6)	3(1.7)	6(3.4)	165(94.3)	4.91	
6	sales of foods after expiration date	last year	1(0.6)	1(0.6)	5(2.9)	29(16.6)	139(79.4)	4.74	−5.34***
		current	-	1(0.6)	1(0.6)	10(5.7)	163(93.1)	4.91	
7	sales of foods with false expiration date	last year	1(0.6)	-	2(1.1)	19(10.9)	153(87.4)	4.85	−3.79***
		current	-	-	2(1.1)	2(1.1)	171(97.7)	4.97	
8	unsanitary selling environment	last year	1(0.6)	-	4(2.3)	23(13.1)	147(84.0)	4.80	−3.54***
		current	-	-	5(2.9)	5(2.9)	165(94.3)	4.91	
9	sales of foods impeding child emotion	last year	-	-	5(2.9)	26(14.9)	144(82.3)	4.79	−3.79***
		current	-	-	2(1.1)	11(6.3)	162(92.6)	4.91	
10	sales of food tie-in toys	last year	-	2(1.1)	7(4.0)	44(25.1)	122(69.7)	4.63	−6.07***
		current	-	-	4(2.3)	15(8.6)	156(89.1)	4.87	
	total	last year			175(100.0)			4.71	−8.46***
		current			175(100.0)			4.90	

† 'last year' 는 응답자가 1 년 전의 상태를 회상하여 응답한 것임.
- 1 점 ~5 점까지 점수부여. 1 점 매우 많은 편 ~ 5 점은 전혀 문제 없음.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가 없음을 나타냄. *** $p < .001$

대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대한 정보제공 및 각종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특히 우수판매업소 신청이 증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제공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주변 판매점뿐만 아니라 학교내 매점, 가정, 학원주변 등 어린이들이 기호식품을 소비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관리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연구사업단 세부사업 결과물의 일부로, 2011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지원(08082먹거리906)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요 약

본 연구는 2008년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피규제자인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 조리·판매업소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이 법의 주요내용과 시행효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2011년 3-4월 두 달 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초, 중, 고 주변 175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와 조리·판매업소 판매원을 대상으로 면접원의 안내에 따라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PC+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분율, 빈도분석,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하여 80% 이상의 응답자가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식품안전 관련정보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90% 정도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만족하였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은 80% 정도였으며,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인식은 50% 정도로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우수판매업소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60% 이상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신청의사가 있었으며, 그 동안 신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실익이 없어서(48.5%)’로 나타났다. 우수판매업소 신청 촉진 방안으로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면 신청하겠다(56%)’는 응답율이 가장 높았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상의 판매제한과 광고기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 기호식품의 종류와 판매금지 식품,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기준, 정서저해식품의 기준 그리고 미끼식품의 광고기준에 대하여 알고 있다(‘자세히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는 비율이 각각 61.7%, 58.3%, 46.3%, 31.1%였다. 반 정도의 응답자가 자신 업소에서 유통되는 식품이 안전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의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제도의 4가지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상미미(49.1%),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도 어린이 식품안전에 큰 변화없음(44.6%), 단속기간에만 잠깐 효과가 있을 뿐임(37.7%), 위반한 판매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없음(37.1%) 순으로 지적하였다. 전년도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와 이상의 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인식이 개선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10가지 판매행위에 대하여 현재 상태와 1년 전 상태를 회상하여 응답하게 한 결과, 제품업소명 미표시 제품 판매,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 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유통기한을 위조한 제품 판매, 식품판매 환경이 비위생적,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항목에서 평균 4.9점(5점 만점) 이상을 획득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 저해 행위는 대단히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4문항 무표시 제품의 유통판매, 국적을 알 수 없는 식품의 판매, 냉장·냉동 보관하여야 하는 제품을 실온에서 판매, 장난감 등을 끼워파는 식품 판매도 5점 만점에 4.85점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1년 전과 비교해본 결과 식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판매행위 10가지 모두에 대하여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와 2010년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와 비교해볼 때 인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보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조사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식생활과 건강증진에 관한 정책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통계청: 한국사회조사 (2010).
2.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제품관리 및 표시 허술해. 월간소비자, 300호 (2008).
3.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식품안전 모니터 보고서 (2009).
4. 최웅규, 유명호, 김종은, 이정수, 현은진: 대구경북지역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유통실태 조사 및 위해항목 시험분석,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결과보고서 (2004).
5. 교육과학기술부: 2010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결과 (2011).
6.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제6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2011).
7. 김혜련: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관리 정책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161, 27-36 (2010).
8. 이승신, 정효지, 이종혜, 이영희: 어린이 기호식품 유통환경 모니터링-대상/영역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용역보고서 (2010).
9. 이영주: 휴대폰으로 비만관리·건강정보 확인 OK, 식품의약품안전청 웹진 열린마루 2010년9-10월호, 4-8 (2010).

1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대전지역 Green Food Zone 시행 6개월 경과된 시점에서 조사 대상 업소 56.3%가 지정된 줄 몰라. 월간 소비자, 2010년 1-2월호 (2010).
11. 식품의약품안전청: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실적 내부자료 (2011).
12.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우수판매업소 현황 알림. 2011. 5. 18. www.kfda.go.kr
13. 식약지킴이 블로그 blog.naver.com/kfdazzang. 2010. 5. 3.
14. 식품의약품안전청: 어린이 기호식품 목록 수정발표(2011년 3월말 기준). 2011. 4. 20. www.kfda.go.kr
15. 안명옥: 식품 안전관리 선진화 방안, 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분야별 과제. 국정감사정책자료집 시리즈, 2006-9 (2006).